명지드론센터운영규정 10-1-20

규정번호 10-1-20
제정일자 2021.1.21
최근개정 2025.3.31
개정차수 1차 개정
관리부서 산학협력단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 명지드론센터(이하“센터”)의 운영·관리, 드론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, 드론산업 저변확대 관련 연구 · 지원 및 지역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센터는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산하에 두며,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시설을 교내 운동장 및 교외 실기비행훈련장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.

제3조(교육장비의 공동 활용) 센터의 드론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교육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.

제4조(직무) 센터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할 수 있다.

1. 드론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
2. 드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수업지원
3. 드론산업분야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
4. 드론교육 인프라를 통한 지역사회봉사 지원
5. 드론교육과 관련한 외부기관 연구과제 수주 및 운영
6. 기타 센터의 목적에 관계되는 업무

제5조(조직과 임무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의 운영과 시설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.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센터에는 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종교관, 운영팀장, 팀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은 산학협력단장, 평생교육본부장을 당연직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(개정 2025.3.31.)
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편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

제7조(예산편성 및 집행) 센터의 세입금은 전액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고, 예산 집행은 산학

협력단 회계를 준용한다.

제8조(운영기준 및 지침)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 법령 및 우리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직제규정) <2025.3.3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

<1> - <16> (생략)

<17> 명지드론센터운영규정(10-1-20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②항의 “평생교육원장”을 “평생교육본부장”으로 한다.